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온라인 플랫폼상 개인 간 거래(C2C)¹⁾ 시 판매자 정보 확인·제공 의무 등 사업자 규율체계를 신설하고(안 제20조의4 신설),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(안 제20조의5 신설).
-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후기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(안 제21조의4 신설),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‘동의의결’²⁾ 제도를 도입함(안 제32조의2 신설).
- ‘임시중지명령’³⁾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(안 제32조의4),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함(안 제45조).

1) 대표적 개인 간 거래(Consumer To Consumer)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“당근마켓”, “중고나라” 등이 있음.

2) 공정위 조사·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조사·심의를 대상이 되는 해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상태의 자발적 해소, 거래질서의 개선 및 소비자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,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, 제출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‘동의의결(同議議決)’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로, 현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여러 법률에 도입되어 있음.

3) ‘임시중지명령’은 현행법상 영업정지 제도가 증거자료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, 정식 시정조치 결정 전에 신속하게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2016년 도입된 제도로, 현재 현행법과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음.

II. 검토의견

□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의 범위 (안 제20조의4)

안 제20조의4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(온라인 플랫폼)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, 개인 판매자의 ‘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’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고, 같은 조 제2항은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정보 등을 분쟁조정기구·법원 또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이는 현행 제20조제2항4)에서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의 ‘성명·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’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들 정보를 ‘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’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, 사업자가 확인·제공하여야 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.⁵⁾

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, 개정안과 같이 입법될 경우 향후 개인 판매자 정보의 수집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변화됨.

4)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)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(이하 “통신판매중개업자”라 한다)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(이하 “통신판매중개의뢰자”라 한다)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(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·주소·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,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·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5)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으로서, 동 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임.

[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범위 변화(5개 → 2개)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법 률	성명·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전화번호 등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시행령	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

자료: 공정거래위원회

다만, 그 구체적 범위를 ‘대통령령으로’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,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개정 시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통신 판매중개업자가 확인·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 판매자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보 수집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(B2C)에 있어 ‘사업자’에 대한 정보와 비교할 때, 개인 간 거래(C2C)에 있어 ‘개인’ 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등은 ‘개인정보’로서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. 아울러, 헌법상 ‘포괄위임 금지원칙’⁶⁾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⁷⁾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,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·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

6) **헌법 제75조**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

7) 「**개인정보보호법**」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보의 구체적 범위는 가급적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.

따라서 안 제20조의4제1항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·제공하여야 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,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사항인 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’를 다음 표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.⁸⁾

[안 제20조의4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0조의4(개인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)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(이하 “개인 판매자”라 한다)인 거래(이하 “개인간 거래”라 한다)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<u>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</u> 확인하여야 한다.	제20조의4(개인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</u>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생략)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

8) 참고로,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의 범위를 “성명·전화번호·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「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, 이러한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 판매자의 ‘연락처 및 거래정보’를 제공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(2021. 4. 14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-006-071호).